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3049
-----------	------

2022. 02. 1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21. 노식래 의원
2. 회부일자: 2022. 1. 25.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2. 2. 11.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노식래 의원)

1. 제안이유

- 대학가 청년들은 거주기간이 짧고 학업과 취업활동에 바빠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이 있음.
- 현행 조례 또한 청년의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장기거주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 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청년의 창업 뿐 아니라 학업,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청년의 창업활동에서 학업, 취업, 창업활동으로, 주택공급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자립기반 강화를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각각 확대함(안 제1조).
- 나. 청년을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자립·정착 기반 마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기본원칙에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기본원칙에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¹⁾, 「청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활동범위에 학업, 취업이라는 현상을 포함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이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공동체의 주체적

1)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략)

2)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청년을 주택시장에서의 단순한 소비주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규정과 기본이념상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포함 시킴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 조례의 성격 상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관련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시장의 책무에 총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 후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조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입법효과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

제정일자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2012. 03. 15.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	
2012. 12. 3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주택정책과	(주거 관련)
2013. 10. 0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자리정책과	
2015. 01. 0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16. 07.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주택공급과	~'22.12.31.만료
2018. 03. 22.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주택정책과	
2018. 03. 2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18. 10. 04.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창업정책과	
2020. 10. 05.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2021. 03. 25.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021. 12. 3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청년기획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으로 하고, “주택공급”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하며,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를 “자립기반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한다.

제2조 중 “소비주체로”를 “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로 하고, “자립”을 “자립·정착”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u>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u>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u>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u> ----- ----- <u>주택공급 및 주거복지</u>----- ----- ----- <u>자립기반 강화,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u>-----.</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u>소비 주체</u>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u>자립할 수 있는 기반</u>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 ----- <u>소비 주체</u>이자 <u>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u>으로 ----- ----- <u>자립·정착</u>----- ----- -----.</p>
<p>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 ----- ----- -----.</p>
<p>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p>	<p>1. ~ 4. (현행과 같음)</p>

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5. <신 설>

5.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